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불균일과세)”를 “(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로 하고,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중 “제1항의”를 “제1항 및 제2항의”로 하며, “아니한다”를 “아니하며, 분양받은 주택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지 아니한다.”로 하여 제3항으로 한다.

- 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각각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 ②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4조 (불균일과세등) 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각각 부속토지를 포함 한다)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제1항의 경우 보존등기가 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는 건축주가 보존등기한 날로부터 2월, 보존등기가 된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로부터 2월을 경과한 후 이전등기(공동</p>	<p>제4조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p> <p>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각각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 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p> <p>②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을 건축주나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22조 제1항 및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p> <p>.....</p> <p>.....</p> <p>.....</p> <p>.....</p> <p>.....</p> <p>.....</p> <p>.....</p> <p>.....</p>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부분발췌)

제9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 주택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1구당 건축면적이 전용면적 60㎡ 이하로 기획된 1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다만, 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준공검사일로 부터 1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임대주택을 준공한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취득세의 경우에는 전액면제
2. 등록세의 경우에는 전액면제
3. 재산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88조의 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4.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토지의 가액에서 감면대상토지가액의 100분의 50을 공제

제11조 (공동주택구입시의 취득세등 감면)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신축한 공동주택을 근로자가 최초로 분양,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 등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등록세면제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취득세액 및 등록세액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